

직업 및 환경성 호흡기계 질환의 보상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소영

목차

- **직업성 호흡기계 질환**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신청절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 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
 - 폐암
- **환경성 호흡기계 질환**
 -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1964년 시행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
- **적용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5인 이상의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 **적용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
 - 당연 적용 사업장은 자동적으로 보험관계 성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무과실책임의 원칙**(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 재해 근로자는 자신의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즉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라는 것을 밝혀야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휴게시간중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MDI·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구리 등의 금속흙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흙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천공**

차.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해당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또는 난소암**

-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바. **비스**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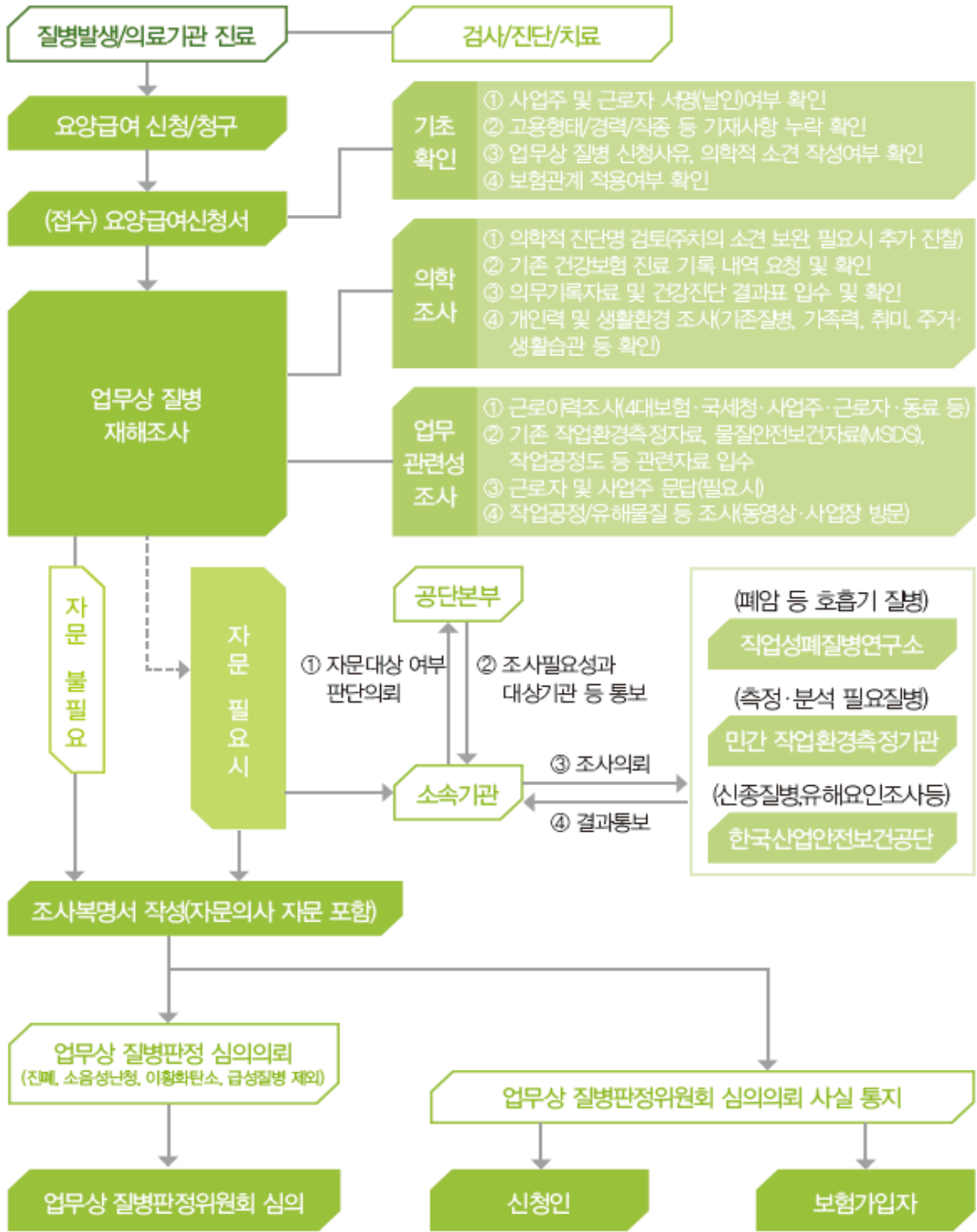
업무상 질병 법제방식

구분	일반적 정의방식	지정일거방식	혼합방식
내용	법령에 개괄적·일반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으로 문제된 질병이 그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정하는 방식	법령에 질병을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방식	일거된 질병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입증을 면하고, 일거되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 업무기인성을 입증한 경우 인정하는 방식
장점	새로운 직업병 발생에 신속적으로 대응	근로자가 입증하는 데 유리하고 안정된 인정기준 확보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며 새로운 직업병 발생에도 신속적으로 대응
단점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문적인 진단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입증책임 부담	새로운 직업병 발생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일거되지 아니한 질병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책임 부담
채택 국가	미국,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 독일,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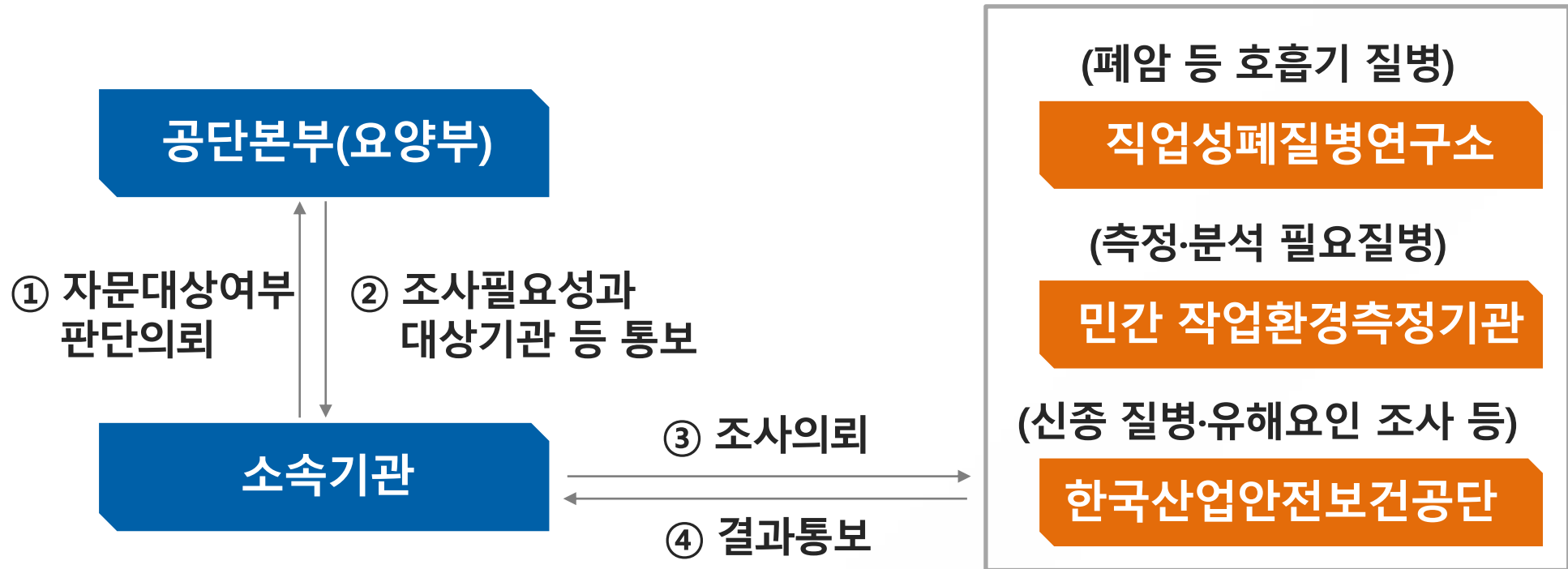
3. 호흡기계 질병

10. 직업성 암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질병 자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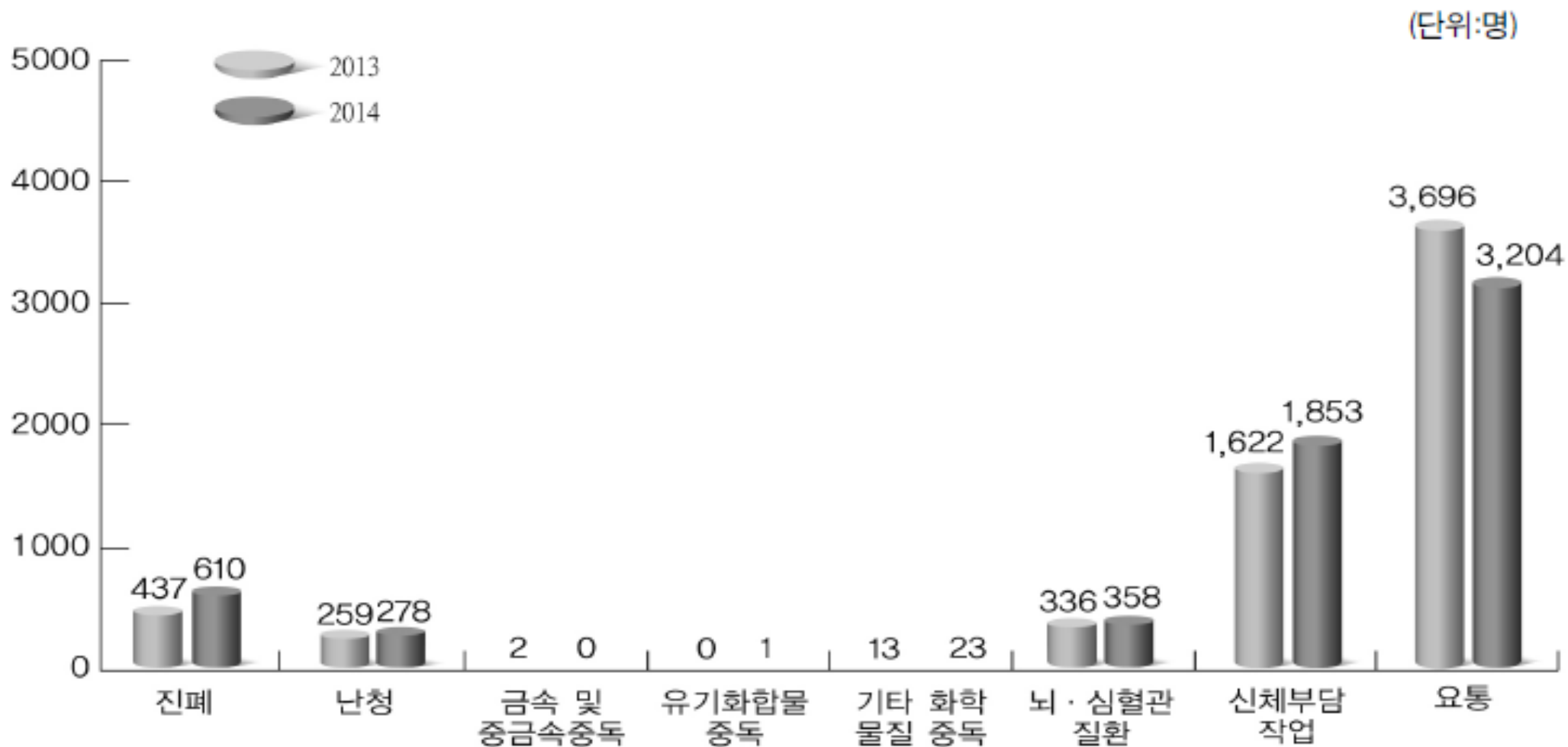


업무상질병 영양재해 발생현황

구분	총계	직업병														
		소계	진폐증	소음성 난청	이상 기압	진동 장해	물리적 인자 기타	이황화 탄소	트리 클로로 에틸렌 (TCE)	기타 유기 화합물	벤젠	타르	염화 비닐	직업성 천식	석면	기타 화학 물질
총계	6,820 (100%)	1,225 (17.96%)	610 (8.94%)	278 (4.08%)	12 (0.18%)	129 (1.89%)	11 (0.16%)	0 (0.00%)	0 (0.00%)	1 (0.01%)	3 (0.04%)	0 (0.00%)	0 (0.00%)	2 (0.03%)	16 (0.23%)	2 (0.03%)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연수	크롬	카드뮴	망간	감염성 질환	직업성 피부 질환	직업성 암	직업병 기타	소계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신체 부담 작업	비 사고성 요통	사고성 요통	수근관 증후군	간질환	정신 질환	직업 관련성 기타	
0 (0.00%)	0 (0.00%)	0 (0.00%)	0 (0.00%)	93 (1.36%)	16 (0.23%)	31 (0.45%)	21 (0.31%)	5,595 (82.04%)	326 (4.78%)	32 (0.47%)	1,853 (27.17%)	1,139 (16.7%)	2,065 (30.28%)	117 (1.72%)	1 (0.01%)	33 (0.48%)	29 (0.43%)	

업무상질병 요양자 비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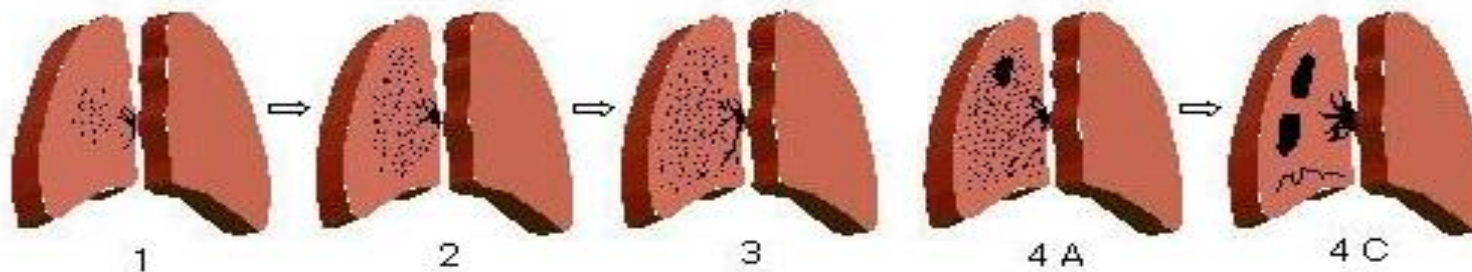


진폐 진단 및 보상기준

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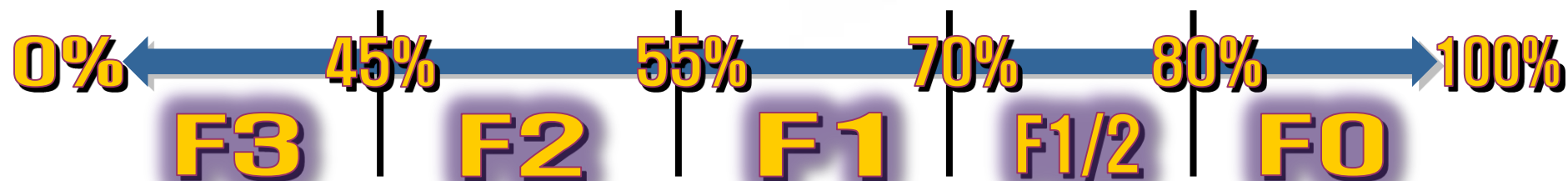
- 판정기준
 -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
- 병형분류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

심폐기능	판정기준
고도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등도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 (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진폐장애등급

병형		심폐기능	정상	경미	경도	중등도	고도
			(F0)	(F1/2)	(F1)	(F2)	(F3)
소음성	1형	1/0,1/1,1/2	13급	11급	7급	3급	1급 (요양)
	2형	2/1,2/2,2/3	11급	11급	7급	3급	1급 (요양)
	3형	3/2,3/3,3/+	11급	9급	7급	3급	1급 (요양)
대음성	4형	4A, B, C	11급	9급	5급	3급	1급 (요양)
		4C 1/2 ↑	11급(요양)	9급(요양)	5급(요양)	3급(요양)	1급(요양)
의증		0/1	무장해(tba 합병증 있는 경우 요양대상)				
정상		0/0	진폐증이 아님(해당사항 없음)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애 이상),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애(F3)로 확인된 경우
-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흡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 노출수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흡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
 - 석탄·암석 분진, 흡,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탄·암석 분진, 흡,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애등급

- 장애판정
 - (폐기능의 판정)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1)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
 - (장애등급의 적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 중 흉복부장기의 장애등급 기준을 적용

장애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애
제3급 (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장애 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애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병형	심폐기능	
1급		1형 이상	고도 장애 FEV1 < 45%	30% < FEV1
3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형 이상	중등도 장애 45% ≤ FEV1 < 55%	30% ≤ FEV1 < 55%
5급		4형		
7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형, 2형, 3형	경도 장애 55% ≤ FEV1 < 70%	55% ≤ FEV1 < 70%
9급		3형, 4형		
11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형, 2형	경미 장애 70% ≤ FEV1 < 80%	70% ≤ FEV1 < 80%
13급		1형		

직업성 폐암 인정요건(안)

- 크롬 또는 니켈 합금강 용접에 20년 이상 종사한 경우이거나 크롬 또는 니켈 합금강 용접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석면노출이 확인되는 경우
- 크롬 또는 니켈 도금에 20년 이상 종사한 경우 또는 크롬 도금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비중격 천공이 있는 경우
- 크롬이 함유된 도료로 20년 이상 도장작업에 종사한 경우 또는 크롬이 함유된 도료로 10년 이상 도장작업에 종사하고 도료 제거, 쇼트 블라스팅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한 경우
-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20년 이상 종사한 경우 또는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10년 이상 종사하고 단 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의증(0/1)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결정형유리규산 함유 재료를 이용한 사상 작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경우 또는 결정형유리규산 함유 재료를 이용한 사상 작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단 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의증(0/1)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결정형 유리규산 함유 석재료를 다루는 석공으로 20년 이상 종사한 경우 또는 결정형유리규산 함유 석재료를 다루는 석공으로 10년 이상 종사하고 단 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의증(0/1)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경성 석면노출

- 석면의 건강영향: 고농도 직업적 노출에서 저농도 환경적 노출로
 - 1st Wave: 석면의 채굴·가공, 19세기 초
 - 2nd Wave: 석면의 산업적인 사용(조선, 건축, 가공산업)
 - 3rd Wave: 석면이 함유된 제품(단열재, 시멘트,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사용



PREVENTING DISEASE THROUGH HEALTHY ENVIRO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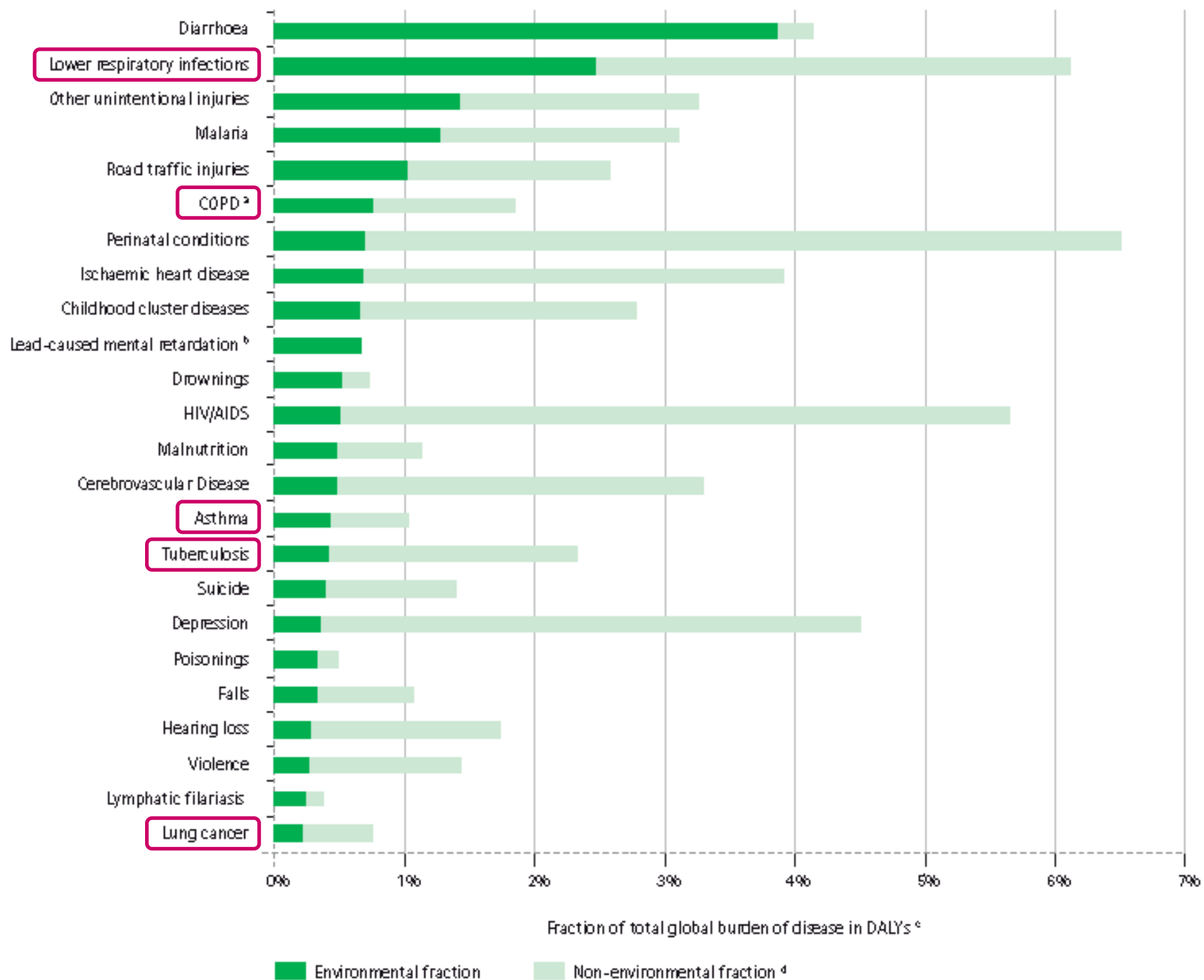
Towards an estimate of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건강한 환경을 통한 질병예방. WHO, 2006

환경적 위험요인이 기여하는 비율
모든 질병의 원인 중 24%
모든 사망의 원인 중 23%

DISEASES WITH THE LARGEST ENVIRONMENTAL CONTRIBUTION



석면이란

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급여

알림마당

자료실

With Eco Harmonist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실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전국지자체
담당부서



석면질병검사
진단지정병원



신청자서식집
다운로드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특



석면피해인정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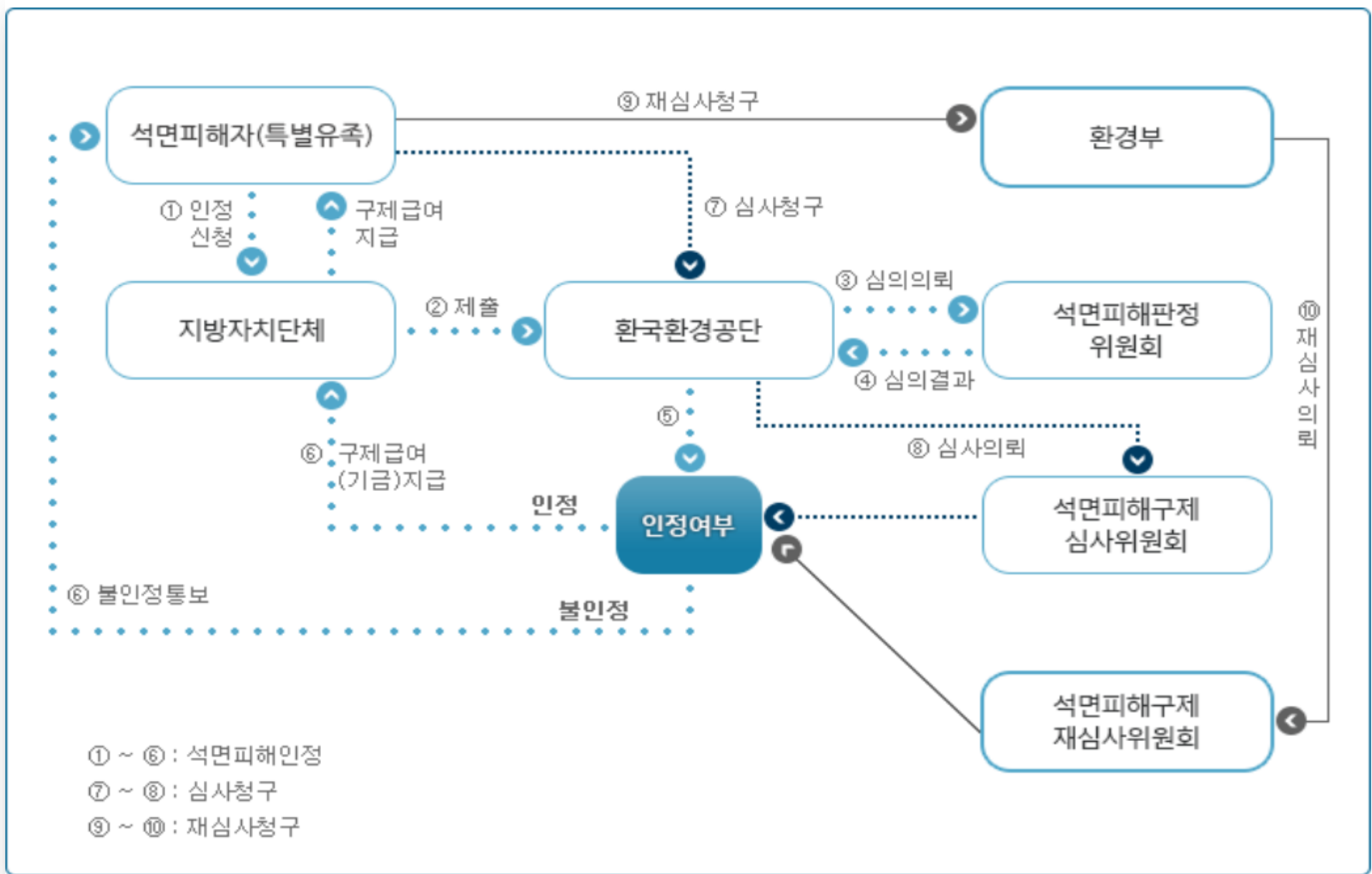


석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자 및 현황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2014.1.1.부터)
-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기금 자원부담: 공유책임의 원칙
 - 중앙정부(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부담금),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부담금)가 공동 부담

석면피해 구제절차 및 행정구제



석면피해 인정기준 - 원발성 악성중피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석면피해 인정기준 - 원발성 폐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 1) 조직병리학적 검사
- 2) 임상적판단과 영상의학적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형판정기준에 따른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mu\text{m}$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mu\text{m}$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mℓ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석면피해 인정기준 - 석면폐증

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애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나.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

석면폐증의 병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의심형, 초기형 및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다. 폐기능 장애의 판정기준

1) 폐기능 장애는 다음의 검사를 모두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가) 노력성 폐활량(FVC)

나) 1초량(FEV1)

다) 폐확산능(DL_{CO})

2) 폐기능 장애단계는 정상, 경도장애 및 고도장애로 구분한다.

3) 1)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애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석면피해 인정기준 - 석면폐증

병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
의심형	다음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기 폐섬유화' 소견만 있고, 소견이 있는 중폐야 또는 하폐야의 좌우 폐절편 각각의 합이 4절편 미만에서 관찰되는 경우 나)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초기형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기 폐섬유화 소견만 있고, 소견이 있는 중폐야 또는 하폐야의 좌우 폐절편 각각의 합이 4절편 이상에서 관찰되는 경우 나) 폐섬유화 소견이 1개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외측 2/3 미만인 경우 다) 폐섬유화 소견이 2개 이상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각각 외측의 1/3 미만인 경우 라) 벌집모양 음영이 1개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외측 1/3 미만인 경우 마) 그 밖에 석면폐증 소견 및 증상이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나 진행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행형	가) 폐섬유화 소견이 1개 이상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외측의 2/3 이상인 경우 나) 폐섬유화 소견이 2개 이상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2개 이상 폐야 외측의 1/3 이상인 경우 다) 벌집모양 음영이 1개 이상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외측의 1/3 이상인 경우

석면피해 인정기준 - 석면폐증

폐기능 장애 단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1초량/노력성 폐활량이 70 미만인 경우)	폐확산능
정상	80% 이상	80% 이상	75% 이상
경도장애	50% 이상 80% 미만	45% 이상 80% 미만	45% 이상 75% 미만
고도장애	50% 미만	45% 미만	45% 미만

장애등급	병형	폐기능 장애
석면폐증 1급	초기 또는 진행형	고도장애
	진행형	경도장애
석면폐증 2급	진행형	정상
	초기형	경도장애
석면폐증 3급	초기형	정상

석면피해인정기준 - 미만성 흉막비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cm 이상, 상하 (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cm 이상, 두께가 3mm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폐기능 장애단계가 고도장애인 경우

석면건강관리수첩 및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건강관리수첩
 -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주로 흉막반 소견자 및 HRCT 병형에 의하여 석면폐증 의심형인 사람에게 교부
 - 정기적인 석면건강검진
-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
 - 피해의료급여 지급 및 석면질병 진찰 및 검사 유효기간 갱신